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BEPS. Accion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는 201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방지 15가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국내법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회기 후반 재무부 (SHCP)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 개혁 입법 취지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 시행 조세 개혁안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현 대중 매체 및 다른 관공서 매체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다.

현재, BEPS 원칙(시행령) 1에 국한한다고 하였을 때, 국제적으로는 2020년 후반 디지털 경제를 통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OECD는 예고한 상태이며, 국내법 경우에는 2020년 연방 세법들에 대한 BEPS 원칙 1에 대한 도입과 동년 5월 12일 시행령 (RMF) 1차 개정안이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현 서류를 작성하며, 주요하게 2015년 발표 OECD BEPS 안을 기준으로, 2020년 초까지 OECD 관련 멕시코 국내외 서적들을 참고하였고, 한국 회계 세무 용어와 조화를 위하여 힘썼으나, 일부 전문 용어는 필자의 짧은 한국어 회계 용어 이해 부족으로, 의역을 하였고, 괄호를 통하여 영어 혹은 스페인어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조세 관련 세계 경향을 보았을 때, 거시적 단계에서 국제 협약을 통하여 국가들간 약속이 이루어지고, 추후, 국내법에 동화를 함으로서, 두 개 이상 국가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중 일부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멕시코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두터우므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 관계자들은 **I. 일반** 부분을 통하여,